

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

규정 ·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· 현행 규정

개정 2025. 4. 7. · 시행 2025. 4. 7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9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7:49:07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,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-04-03>

제2조(구성)

① 위원회의 구성은 브랜드전략본부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해당 부서장, 해당 학과장,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-04-03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,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. <개정 2023-04-03>

제3조(임기)

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- ①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
- ③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
- ④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
- ⑤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(매뉴얼)

위원회는 대학의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“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”을 전 부서와 학과에 비치하게 하고, 이를 상시 교육 및 관리 자료로 활용 한다.

제7조(자료 제공)

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. <개정 2023-04-03>

제8조(주관 부서)

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. <개정 2023-04-03>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3.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